Ⅰ. 운영규정개요

1. 시설 기본정보

운영법인	사회복지법인 울산명성복지재단(대표이사 오명주)		
시 설 명	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(시설장 최대룡)	전 화	052)286-7111
설치일자	2004.11.05	팩 스	052)286-7118
시설종류	노인요양시설	입소정원	140명
입소대상	치매•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어르신 - 1,2등급, 3,4,5등급(시설급여)		
면 적	A동 2,264.46㎡(지상3층), B동 1,290.79㎡(지하1층, 지상3층)		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기간

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등급 갱신일 후 재계약 함.

2) 계약의 목적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)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 구분.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1명 이상 정하여야 하며, 어르신에 대해 발생하는 퇴소, 사망 등 신원인수의 책임이 있음. 또한,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.

5) 계약의 해제

입소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함. 시설의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

하였을 때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음.

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③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입소자는 시설에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

3. 필요 시 의료이용 절차

1) 입소자의 진료는 월 2회 이상 협력병원의 촉탁의가 진료한다.

2)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과 가장 가까운 119 구조대 및 인근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 신속히 이송한다.

3)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 시설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4) 입소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4.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

1) 시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, 전문인배상책임보험, 가스 및 화재보험, 차량보험에 가입하나 직원 및 입소자 고의로 인한 과실과 손해는 원인을 발생시킨 본인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.

2) 시설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고의 방지 및 응급상황발생 대응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.

5. 운영규정의 개정

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상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 단,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·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